

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-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10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민선9기 시장의 시정운영 지원 및 보좌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비서 정원을 ‘일반직 공무원’에서 ‘별정직 공무원’으로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비서 정원 ‘일반직(7급)’을 ‘별정직(7급 상당)’으로 변경(예정)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(안 별표 3)
- 나. 문구정정(안 별표 3)

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6. 6. 17. ~ 2026. 6. 29. (12일간)

※ 「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1호에 따라 단축

- 사. 기타 참고사항

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실 · 국		기획경제실
입 안 자	기획예산과장	박 승 규
	조직혁신팀장	염 정 선
	담 당 자 (연 락 처)	이 광 희 (481-3108)

<별 지>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(단위: 명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구	동
총계	2,342						
정무직 소계	1						
시장	1	1					
일반직 소계	2,316						
2급	1	1					
3.4급	1	1					
4급	16	6	1	3	4	2	
5급	115	46	2	10	15	17	25
6급 이하	2,180						
전문경력관	3						
별정직 소계	3						
5급 상당	-						
6급 상당 이하	3						
연구직 소계	10						
연구관	-						
연구사	10						
지도직 소계	12						
지도관	1			1			
지도사	11						

